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

제출년월일 : 2026. 10. 1.
제 출 자 : 송파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지역사회 발전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한 모범구민 및 단체를 보다 폭넓게 발굴·포상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봉사·참여 분위기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부문별 시상 인원 변경 및 띄어쓰기 등 맞춤법 표기를 정비(안 제3조제2항)

나. 시상 등 관련 조항 정비(안 제5조)

다. 조항 삭제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
다. 관련부서 사전협의: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, 여성보육과(성별영향평가), 기획예산과(규제사전심사)

라. 기 타

(1) 개정문안,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, 관계법규 : 별첨

(2) 입법예고: 2026. 9. 9.~ 9.29.

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각 부문별 2명”을 “효행 및 청소년 부문 2명(또는 단체) 이내, 그 외 부문은 3명”로 하고, “아니 한다”를 “아니한다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시상)”을 “(시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수상자에게는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의 종류 및 인원) ① (생 략) ② 구민상은 각 부문별 2명(또는 단체) 이내로 시상하고, 구민대상은 1명(또는 단체)을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뚜렷한 공적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 한다.	제3조(상의 종류 및 인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효행 및 청소년 부문 2명(또는 단체) 이내, 그 외 부문은 3명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 아니한다.
제5조(시상) (생 략) <신 설>	제5조(시상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.
제6조(상장 등)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메달을 수여할 수 있다.	<삭 제>

□ 관련 법령

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구민상 시상 인원을 최대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상패 제작 비용 추가 발생

2. 미첨부 근거(이유) 규정

-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

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)

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**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**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구민상 시상 인원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- 작성자 : 주 무 관　　행정7급　황아현
- 검토자 : 자치행정팀장　행정6급　오정필
- 결재자 : 자치행정과장　행정5급　임영천